

- 공모 : 2020.11.5.(목)
- 접수 : 2020.12.7.(월) 10시 - 12.9.(수) 17시
- 최종선정발표 : 2021.3.2.(예정)
- 문의 :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02-336-6389

2021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공모 성평등 사회조성사업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한국 사회 여성단체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스무번 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안내드리며,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드림

<목 차>

2021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개요	1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 및 지정주제 지원사업	4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1. 신생여성단체지원	8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2.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1

2021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개요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추진기간

2021년 3월~2021년 10월 (총 8개월)

* 사업선정 후 3월내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계약, 교부금 지급, 선정단체 워크숍 등 추진 예정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지원대상	지원예산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2년
	지정주제1. 재난과 여성	
	지정주제2. 여성 및 이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 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대 1천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주의) 운동(활동) 그룹 • 사업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일정

구분	일정(안)	비고
사업공고	2020년 11월 5일(목)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접수	2020년 12월 7일(월)~12월 9일(수)	※ 온라인 신청접수 (womenfund.kr)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20년 12월 10일(목)~2021년 2월 12일(금)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진행
선정 발표	2021년 3월 2일(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2021년 3월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네트워크 워크숍	2021년 3월 중순	
사업 진행	2021년 3월 ~ 10월	
최종보고서 제출	2021년 11월 20일 이내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 용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0년 12월 7일(월) 10시 ~ 12월 9일(수) 17시
제출방법	<p>(1)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접수방법]</p> <p>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1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지원신청서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p> </div> <p>(2)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1개로 통합하여 첨부 제출 ※ 파일명 <2021_지원분야_단체명.hwp> - 공문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순으로 배치하여 파일 1개 생성</p>

	<p>(3)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지정 서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2020년 현재,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必
--	---

5.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 및 지정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 및 지정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구분	내용
(자유공모)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p>○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p> <p>○ 성평등 사회 실현 및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 사업,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이 있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인권 증진•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 지역 및 풀뿌리 여성운동 활성화• 여성운동 글로벌 역량강화• 과학(의료)기술과 젠더혁신, 정보기술과 젠더 미래세대와 성평등• 여성운동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치유•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사이버성폭력 ·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과 성평등• 여성과 팬데믹• 기후변화와 젠더

3. 지원사업 구분 (총 4개 분야)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원)
자유 주제	1년	비영리 여성단체	• 2021년 3월~10월 이내 [자유주제 2년-신규사업] • 2021년 3월~2022년 10월 이내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원 ※ 관리운영비 최대 40%지원 • 최대 2,000만원 • 자유주제 2년 분야는 1년 2,000만원 2년 4,000만원 이하
	2년		[자유주제 2년-연속사업] • 2021년 3월~10월 이내 • 2차년도 사업 심사	
	지정주제 1.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 2021년 3월~10월 이내	
	지정주제 2. 재난과 여성			

※ '재난과 여성' 및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1년'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1년 → 지정주제 1.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또는 자유주제 1년 → 지정주제 2. 재난과 여성)하여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정주제 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예방' 분야의 경우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예. 상담 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4. 신청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구성되어야 함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여성단체의 부설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지원 가능)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심사과정에서 단체 증빙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6.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 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8년~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이동 폭력, 신생단체 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운영비<예: 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와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를 신청 지원금의 4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COVID19로 인한 비영리단체의 사업 추진 여건 또는 환경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신생/차세대 제외)에 한해 관리운영비를 최대 40%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제한 비율을 두지 않기로 함. <2020년 한국여성재단 제3차 배분위원회의>)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1. 신생여성단체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3월~2022년 10월 이내※ 2년 연속 지원*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1년 최대 1,000만원 (2년 최대 2,0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지원
- 사업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사업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4.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심사과정에서 단체 증빙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규모

단체 당 1년 최대 1,000만원 이하 지원 (2년 최대 2,000만원)

6.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 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20년 지원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8년~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 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종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4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2.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함

3. 지원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2021년 3월 ~ 10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사업비 지원※ 활동과 관련된 제반 비용 신청 가능※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4. 신청대상

- 여성(주의) 활동 그룹(팀)

- ※ 신청 조건
 - 최소 3명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한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 된 그룹으로서 여성운동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룹
 - ※ 6개월 이상의 활동경력 제시 필수
 - 등록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5. 신청시 유의사항

- 그룹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